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78 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 : 한병도·황운하·양부남

김영배 · 이춘석 · 이해식

박용갑 • 이원택 • 정태호

위성곤 · 신정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,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,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,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,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, 지방에 있는 초·중·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

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·중·고등학교를 모두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,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 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13조).

법률 제 호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"을 "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고등학교·고등기술 학교를 모두 졸업하고, 수도권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 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)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

나.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
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행정적·재정적
지원 등 대통령령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2. "지역균형인재"(이하 "지역	2			
인재"라 한다)란 <u>지방대학의</u>	<u>다음 각</u>			
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	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사람을 말한다.				
<u><신 설></u>	가.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			
	재하는 「초・중등교육			
	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			
	교와 중학교・고등공민학			
	교 및 고등학교・고등기술			
	학교를 모두 졸업하고, 수			
	도권에 소재하는 「고등교			
	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			
	른 학교(원격대학 및 각종			
	학교는 제외한다)에 재학			
	중이거나 졸업한 사람			
<u><신 설></u>	나.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			
	방대학을 졸업한 사람	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		
제13조(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	제13조(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			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	

4	국기	구와	지방지	사치딘	체는	다
음	각	호에	해당	하는	경우	공
공기	기관	및	기업이	네 <u>대</u>	통령링	형으
<u>로</u>	정칭	하는	바에	따라	· 필요	2.한
지	원을	할 수	는 있다	7.		

1. ~ 3. (생 략)

4
<u>행정적·재정</u>
적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
1. ~ 3. (현행과 같음)